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5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복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기능직 10급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3조(정원책정기준) [별표 2] 의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10급을 삭제
- 나.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10급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중 기능10급을 삭제하고
- 안 제4조 [별표 3]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함.
- 이 개정 조례안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인력TF」 를 구성하여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으로, 2011. 9. 30일 통보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순증분 9명 확충이 결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표를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